

마. 절차 및 방법 : 승급기간 1년에 대하여 1호봉씩 승급, 잔여승급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함

바. 승급의 제한

- 1) 승급이 제한되어 승급시킬 수 없는 기간(영 제14조제1항)의 종류
 - (가) 징계처분, 직위해제 또는 휴직중인 경우(공무상 질병휴직 제외)
 - (나) 징계처분 집행 종료일부터 승급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
 - (다) 근무성적평정점이 최하등급에 해당되는 경우로 최초정기승급 예정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
- 2) 승급제한이 중복되는 경우의 승급제한기간 계산(영 제14조제2항)
 - 승급이 제한되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이나 기타의 사유로 승급을 제한받게 되어 승급제한이 중복되는 경우, 당초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승급제한이 시작되는 것으로 함
- 3) 승급제한기간의 단축
 - 징계처분을 받은 후 훈·포장 및 국무총리이상의 표창, 모범공무원 포상·제안 채택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대해서만 영 제1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승급제한 기간의 1/2 단축할 수 있음

사. 승급기간의 특례

- 1) 「병역법」이나 기타 법적 의무 수행을 위한 휴직 기간
- 2)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처분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징계기록말소 소요기간(강등-9년, 정직-7년, 감봉-5년, 견책-3년)이 경과한 경우, 처분기간을 제외한 승급제한 기간
- 3) 근무성적평정점이 최하등급에 해당되어 승급제한을 받은 자가 승급제한기간(6개월)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의 그 승급 제한 기간
- 4) 국제기구·외국기관·국내외 대학·국내외 연구기관·재외국민교육기관·다른 국가기관 등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한 기간(비상근 근무 기간 : 5할), 외국 유학을 위한 휴직 기간
- 5) 「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제5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기 위하여 휴직한 기간
- 6) 자녀양육을 위해 휴직한 경우,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(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11조의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 6개월)
※ 단, 셋째 이후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은 전 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
- 7) 징계의결요구·형사사건 기소로 직위해제 되었다가 징계의결 요구가 기각되거나 직위해제처분 또는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무효, 취소되거나 무죄 선고를 받은 경우 그 직위해제 처분기간
- 8) 직무수행 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 또는 법령상의 징계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로 직위해제 처분 또는 징계처분이 무효, 취소된 경우 그 처분 기간(승급제한기간 포함)